

[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공고 제2026-61호]

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,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(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)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7. 27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



1. 건 명 : 처분사전통지서(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)
2. 근 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 참조)
4. 공고기간 : 2026. 7. 27. ~ 2026. 8. 10. (15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지역협력과(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천북로33, 3층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0503-8803-0632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박현솔(Tel. 061-650-011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사전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6. 7. 27. ~ 2026. 8. 10.)

연 번	성 합	생년월일	주 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 사유
1	장○수	'69.02.27.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26번길 13-○○	처분사전통지서 (의견제출 통지)	○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-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: 수급자격(일용근로자) 인정 신청 당시, 사업장(○○,△△, □□)에서 <u>총 6일간 근로한 사실이 있었음에도, 해당 근로 사실을 미신고하여</u>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함 - 부정수급액 등 총 반환명령액: <u>1,251,740원</u>	폐문부재

2026년 7월 27일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

